

도시이동권리와 행정처분법

如上所述，三者都是在一定条件下对事物的属性进行抽象化处理的结果。

新開公司總經理：王志華
新開公司總經理：王志華

서울특별시

00-144 서울 종로 1가 31번지 / 청화 (01)731-6150~1 / 팩스 731-6682

ר' י. 11010-13

中華書局 1994. 8. 29

· 三 · (三)

四、總評述

卷之三

취급		사	찰
보증			
기획총괄실장	김철		
법무 담당관			
법제 개발			
기안	이종렬	조	준

1. 차출특별시정지이동처인용결제자료를 별첨한과 같이 사로에 개재하여 발행하고자 합니다.

卷之三十一

卷之三

卷之三

第三章 人物介绍

1.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을 제정하는 원칙입니다. 각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원칙을 서로에 계약하여 체결하기 바랍니다.

地 朝鮮事蹟 392 頁

서울특별시장

(13)

卷之三

한국 예술사

1. 서울특별시 토지이용관리위원회 평가요령을 시로에 개재하여 할당도록 하였으니
질문에 참고바람.

가. 발행예정일 : 1994. 8. 30.

서울특별시예규 제59호(생략).

검열
1948.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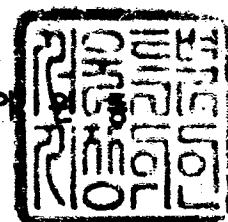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토지이동처분요령별지요령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년 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토지이동 처리 요령 폐지 요령(안)

1. 폐지 사유 : 지적 관계 상위 법규 및 타 법규의 정비, 개정 등으로 충복 규제 또는 상위 법규에 저촉되거나 규제 근거 및 실효성이 없음

2. 주요 골자

- 지적 축량 대형 법인이 분할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부지연장의 통로면적을 대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전·답·임야인 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기준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허가 절차 없이 처리 가능토록 한 규정
- 도시계획 또는 토지 이용 계획상 불합리한 경우 토지 합병을 금지한 규정
-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대지 이외의 지목을 대지로 지목 변경 처리할 경우 면적 기준을 정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적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내부부예규, 도시계획법령, 건축법령, 건설부령,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공개념관련법령 및 주차장법 등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조회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예규 제694호

서울특별시로지이동처리요령폐지요령안

서울특별시로지이동처리요령(예규 제470호 85.3.20)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부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종로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 / 팩스 731-6562

문서번호 법률 11010-1477

시행일자 1994. 9. 16

경유 (제 1 항)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장
보증	<i>952</i>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i>1</i>
법제 계장	<i>12</i>
기안	이종범
별조	

제목 서울특별시동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폐지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동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폐지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 예규안 1부, 끝.

(제 2 항)

수신 : 공보1담당관

제록 : 시보개재

1. 서울특별시동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 서울특별시 예규 제 1호 2부, 끝.

(제 3 항)

수신 : 동수선유통과장

제록 : 예규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동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폐지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 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4. 9. 26

첨부 : 서울특별시 예규 제 1호(생략), 끝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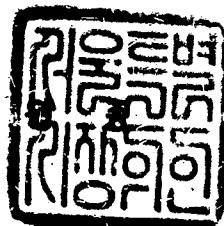
(기획관리실장 전결)

서울특별시 능인용조경상의원의규정부칙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년 9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규정 폐지규정안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농지전용의 협의·동의·승인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산업경제국장과 관련국장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제정근거인 "농지전용억제지침을위한준칙"이 개정후 폐지되어 위원회의 주기능인 조정·심의기능상실로 인하여 본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농지전용억제지침제정을위한준칙 제6조(농림수산부훈령
제61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